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도10017 가. 국외이송유인 나. 피유인자국외이송 다. 특수감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효영(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6노33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수감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

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감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공소외인 등은 2025. 3.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2개를 달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인천공항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5. 3. 27. 18:00경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으로 출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국외이송유인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유인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그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4. 12. ~ 2025. 1.경 해외 구직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소외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2025. 3. 26. 저녁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만났다.

(다) 그 무렵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를 불상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범행을 계획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자신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캄보디아에 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인 2025. 3. 27. 오전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항공권으로 2025. 3. 27. 18:00경 인천공항을 통해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마)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공소외인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어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였으며, 감시·통제를 받으며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건물에 감금되었다.

(바) 한편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물리력 또는 실력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기망 또는 유혹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공소외인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 시점은 피고인, 공소외인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감시·통제하는 등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국외이송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가 국외이송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2)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

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국외 이송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국외 이송 후라면,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공소외인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겨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유인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

대법관 김성수 _____